

# 10.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중개정령

행정자치부령 제19호 1998. 12. 7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신청을 해태한 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고 있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부과금액을 낮추어 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 제공)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과태료부과·  
징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3조제1항관련)

부과기준	부과금액
2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5
2월이상 5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15
5월이상 8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20
8월이상 12월미만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25
12월이상 해태	등록세액의 100분의 30

※ 비고 : 등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세가 비과세·면제·경감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부동산가액에 부동산 등록세율을 곱한 금액을 등록세액으로 본다.